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00. 6.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 농어촌 주민의 약 75퍼센트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
 - 2000년 현재 이천시에 111개의 간이상수도 설치·운영중
- 그러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매년 약 10퍼센트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
 -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이 전체의 55퍼센트
 - '2000년 1/4분기 수질검사결과 111개소중 14개소(12.6퍼센트)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
-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 구 분 | 설치주체 | 시 설 규모 | 비고 |
|---------|-------|---|----|
| 간이상수도 | 시장·군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인구 100 ~ 2,500인 - 시설용량 20 ~ 500톤/일 이내 | |
| 소규모급수시설 | 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인구 100인 미만 - 시설용량 20톤/일 미만 <p>※시장·군수가 지정한 시설</p> | |

 주요골자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예기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도록 함(안 제10조).

-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천시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 (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제40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어 시설을 폐지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 (요금징수) ①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천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 (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 4 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40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20조 (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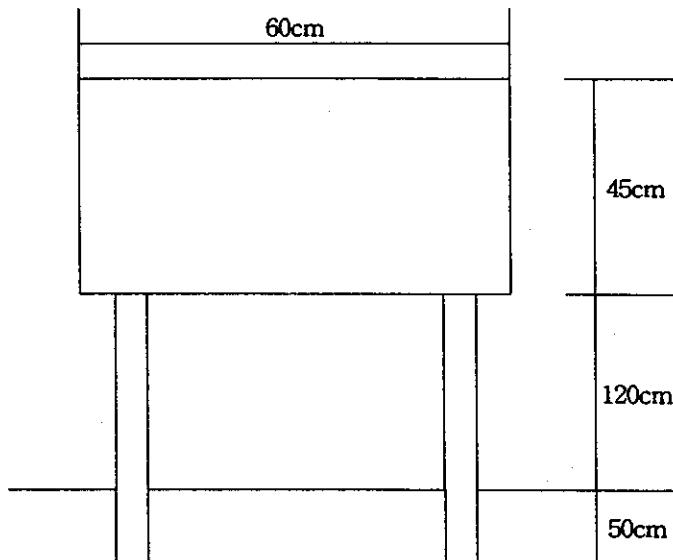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색 : 흰색

글씨 : 청색

○ 내용문

알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이천시 상수도사업소(전화 :)

신·구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u>〈설설〉</u> 2. <u>간이상수도관리자</u>”(이하 “관리자”라 한다) 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u>간이상수도</u>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함은 <u>간이상수도</u>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p>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u>간이급수시설</u>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함은 <u>간이급수시설</u>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p>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u>간이급수시설</u>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u>간이급수시설</u>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p> |

제4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 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제40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 | |
|--|--|
| | <p><u>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
| <p>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 <p>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조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p>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p> | <p>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p>〈신설〉</p> |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p> |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요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이천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어 시설을 폐지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협의회동의서(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을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0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 | |
|--|---|
| <p>〈신설〉</p> <p>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u>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u></p> <p>제13조(설치) 관리자는 <u>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u></p> <p>제14조(구성)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u>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u>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u>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 <p>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u>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p> <p>제16조(설치) <u>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u>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u></p> <p>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u>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의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신설>

2. (생략)

3. (생략)

4. 간이상수도의 요금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16조(개최) ①(생략)

1. (생략)

<신설>

2. (생략)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19조(개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제40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내용 - 앞부분 별표 참조)